

# 감정평가서

건 명 : 천윤선 소유물건 (2025타경51464)

번 호 : RB250919-08-31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사장 조창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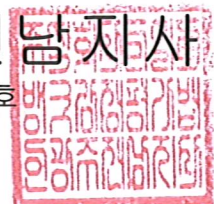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507호

TEL. (061)982-1230

FAX. (061)982-1231



# ( 토지 )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장 승 옥

장 승 옥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지사장 조창범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금오역일천일십사만육천사백원정 (₩510,146,400.-)			
의뢰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조미애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천윤선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5. 09. 30	2025. 09. 24 ~ 2025. 09. 30	2025. 09. 30

##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리)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원)
토지	14,530.0	토지	14,530.0	-	509,823,000
(제시외건물)	(9.8)	제시외건물	9.8	33,000	323,400
	0	하	여	백	
합계					₩510,146,4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조창범

조창범



심사확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 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소재 "송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법원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 2. 대상물건의 현황

[ 전라남도 함평군 ]

구분	기호	소재지 지 번	면적(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2025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토지	1	엄다면 송로리 936-2	86.0	대	전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11,100
	2	엄다면 송로리 938	1,256.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8,840
	3	엄다면 송로리 886-12	1,613.0	전	전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10,300
	4	엄다면 송로리 936-1	608.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8,770
	5	엄다면 송로리 935	1,808.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8,840
	6	엄다면 송로리 933	1,597.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8,410
	7	엄다면 송로리 904	890.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8,860
	8	엄다면 송로리 902	2,496.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평지	7,990
	9	엄다면 송로리 892	1,828.0	전	전	계획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9,880
	10	엄다면 송로리 890	1,365.0	전	전	계획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10,200
	11	엄다면 송로리 886-19	232.0	전	전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0,200
	12	엄다면 송로리 886-18	751.0	전	전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0,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본 건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2조 제1호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 4. 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 및 가격조사는 2025년 09월 24일 ~ 09월 30일에 행하였음.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9월 30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하였음.

## 5. 감정평가방법

### 가. 토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 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본 건 목록의 표시 및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음.

나. 본 건 토지 기호(2),(12) 일부는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도면에 의하여 도로로 이용중인 부분의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개별요인 비교 중 획지조건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음.

다. 본 건 토지 기호(3),(11),(12) 일부가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본 건 토지 기호(5),(6),(8) 공중공간 일부에는 별첨 "지적도" 에 도시한 바와 같이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래와 같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되,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료를 표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구분지상권 설정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준)

구분	기호(5)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35)	기호(6)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33)	기호(8)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02)
설정일시	2002.11.15	2002.11.15	1998.07.03
목적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116㎡의 상방 16m로부터 45m 사이의 공중공간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481㎡의 상방 16m로부터 45m 사이의 공중공간	철탑부지 152㎡ 북동쪽
존속기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금703,540원	금2,917,270원	금5,112,700원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마.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 건 토지 기호(1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하고 있으며, 현황에 의거 개략적인 실측 면적으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소유권 등 권리관계,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바. 별첨 "사진용지" 와 같이 본 건 토지 기호(11)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등 권리관계, 일괄경매 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토지가격 산출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한 후, 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등에 대한 분석후 필요한 조정을 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 나. 비교표준지 선정

##### 1)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전라남도 함평군, 2025년 01월 01일 ]

기호	소재지 지 번	면적(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 (원/m <sup>2</sup> )
A	엄다면 송로리 929	2,030.0	전	전	계획관리	세로(불)	사다리 완경사	8,860
B	엄다면 송로리 876-3	2,380.0	전	전	계획관리	맹지	사다리 완경사	10,800

##### 2) 비교표준지 선정 사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상기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전라남도 함평군 ]

표준지	기 간	용도지역	변동률 (%)	지가변동률 산출
A,B	2025.01.01 ~ 2025.09.30	계획관리	0.227	2025.01.01 ~ 2025.08.31 : 0.186 2025.08.01 ~ 2025.08.31 : 0.042 $(1 + 0.00186) * (1 + 0.00042 * 30/31)$ $\approx 1.00227$

※ 2025년 09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5년 08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라. 지역요인 비교

본 건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100/100 = 1.000)

## 마. 개별요인 비교

### ① 개별요인 비교항목

[ 농경지대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농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관개, 배수 재해의 위험성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고저 등 경작의 장애, 토지이용상황 토양오염	면적, 경사, 경사도, 경사의 방향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② 개별요인비교치 결정

기 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A	1.00	1.00	1.00	0.95	1.10	1.00	1.045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면적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우세함.							
2	A	1.00	1.00	1.00	0.98	1.00	1.00	0.98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 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3	B	1.00	1.15	1.00	0.98	1.00	1.00	1.127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3 (접도구역 저축부분)	B	1.00	1.15	1.00	0.98	0.85	1.00	0.958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축부분 등)에서 열세함.							
4	A	1.00	1.00	1.00	0.95	1.00	1.00	0.95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5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6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7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8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9	A	0.95	1.00	1.00	1.00	1.00	1.00	0.95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10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와 전반적으로 대등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 호	비 교 표준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1	B	1.10	1.15	1.00	1.10	1.00	1.00	1.392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함.							
11 (접도구역 저축부분)	B	1.10	1.15	1.00	1.10	0.85	1.00	1.183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하나,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축부분 등)에서 열세함.							
12	B	1.10	1.20	1.00	0.94	1.00	1.00	1.241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함.							
12 (접도구역 저축부분)	B	1.10	1.20	1.00	0.94	0.85	1.00	1.055
비교의견	본 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축부분 등)에서 열세함.							

##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선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2) 관련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01두3808, 2003.02.28) 등에서 인정되는 점을 참작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인근 평가사례 자료

[ 전라남도 함평군,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기호	목적	기준시점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단가(원/m <sup>2</sup> )	선정여부 / 비교
				이용상황	건물			
1	법원 경매	2024.11.11	엄다면 엄다리	계획관리	전	397.1	30,200	-
			888-3	-	-			
2	시가 참고	2023.05.02	엄다면 송로리	계획관리	전	2,577.0	42,000	-
			700	-	-			

[ 전라남도 무안군,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기호	목적	기준시점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단가(원/m <sup>2</sup> )	선정여부 / 비교
				이용상황	건물			
3	법원 경매	2023.05.31	무안읍 용월리	계획관리	전	1,084.0	35,000	-
			875	-	-			
4	법원 경매	2025.05.16	무안읍 용월리	계획관리	전	407.0	44,200	-
			505	-	-			

## 4) 인근 거래사례 자료

[ 전라남도 함평군,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호	목적	거래시점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매매금액(원)	선정여부 / 비교
				이용상황	건물		단가(원/m <sup>2</sup> )	
a	매매	2024.04.12	엄다면 엄다리	계획관리	전	1,533.6	64,000,000	선정
			273-1	-	-		41,731	
b	매매	2023.11.17	엄다면 송로리	계획관리	전	1,087.0	36,000,000	-
			886-5	-	-		33,118	

## 5) 용도별낙찰(매각)가율 통계(최근 1년)

(출처:지지옥션)

구 분	전라남도		함평군	
	매각가율	매각건수	매각가율	매각건수
전	63.90%	596	42.54%	4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 (1) 격차율 산정 산식

$$\text{격차율} = \frac{\text{비교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2)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 단가

표준지 기호	사례 <sup>*1)</sup>	사례가격 (원/㎡)	사정보정 <sup>*2)</sup>	시점수정 <sup>*3)</sup>	지역요인 <sup>*4)</sup>	개별요인 <sup>*5)</sup>	산출단가 (원/㎡)
A	사례 a	41,731	1.000	1.00983	1.000	0.857	36,115
B	사례 a	41,731	1.000	1.00983	1.000	0.839	35,356

\*1) 사례 선정이유

상기 사례, 사례 중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 개별요인의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a)를 선정함.

\*2) 사정보정

사례(a)는 거래당사자간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3) 시점수정

[ 전라남도 합평균 ]

구분	기 간	용도지역	변동률 (%)	지가변동률 산출
사례a	2024.04.12 ~ 2025.09.30	계획관리	0.983	$(1 + 0.00155 * 19/30) * (1 + 0.00072) * (1 + 0.00063) * (1 + 0.00097) * (1 + 0.00087) * (1 + 0.00079) * (1 + 0.00083) * (1 + 0.00074) * (1 + 0.00099) * (1 + 0.00186) * (1 + 0.00042 * 30/31)$ $\approx 1.00983$

※ 2025년 09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5년 08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4) 지역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유사함.(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표준지 기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A	사례 a	0.95	0.95	1.00	1.00	0.95	1.00	0.857
비교의견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행정적조건(자연취락지구 소재 여부 등)에서 열세함.							
B	사례 a	0.93	0.95	1.00	1.00	0.95	1.00	0.839
비교의견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접근조건(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등), 행정적조건(자연취락지구 소재 여부 등)에서 열세함.							

### (3)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단가

비교표준지 기호	공시지가(원/㎡)	시점수정 <sup>*1)</sup>	산정단가(원/㎡)
A	8,860	1.00227	8,880
B	10,800	1.00227	10,824

\*1) 시점수정치는 "표. 1. 다. 시점수정" 참조.

### (4) 격차율 산출

표준지 기호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단가(원/㎡)	기준시점의 비교표준지 단가(원/㎡)	격차율
A	36,115	8,880	4.067
B	35,356	10,824	3.266

###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 제반 가격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산출된 격차율과 인근 지가수준 및 평가목적(경매)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보정함.

비교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4.06
B	3.2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단가

본 건 토지의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을 종합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단가를 결정함.

본건 기호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기호	공시지가						
1	A	8,860	1.00227	1.000	1.045	4.06	37,676	38,000
2	A	8,860	1.00227	1.000	0.980	4.06	35,332	35,000
3	B	8,860	1.00227	1.000	1.127	3.26	32,626	33,000
3 (접도구역 저축부분)	B	8,860	1.00227	1.000	0.958	3.26	27,733	28,000
4	A	8,860	1.00227	1.000	0.950	4.06	34,251	34,000
5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6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7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8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9	A	8,860	1.00227	1.000	0.950	4.06	34,251	34,000
10	A	8,860	1.00227	1.000	1.000	4.06	36,053	36,000
11	B	8,860	1.00227	1.000	1.392	3.26	40,297	40,000
11 (접도구역 저축부분)	B	8,860	1.00227	1.000	1.183	3.26	34,247	34,000
12	B	8,860	1.00227	1.000	1.241	3.26	35,926	36,000
12 (접도구역 저축부분)	B	8,860	1.00227	1.000	1.055	3.26	30,541	3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구 분	기 호	사정면적(m <sup>2</sup> )	단가(원/m <sup>2</sup> )	시산가액(원)	비고
토지	1	86.0	38,000	3,268,000	-
	2	1,256.0	35,000	43,960,000	-
	3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4	608.0	34,000	20,672,000	-
	5	1,808.0	36,000	65,088,000	-
	6	1,597.0	36,000	57,492,000	-
	7	890.0	36,000	32,040,000	-
	8	2,496.0	36,000	89,856,000	-
	9	1,828.0	34,000	62,152,000	-
	10	1,365.0	36,000	49,140,000	-
	11	177.0	40,000	7,080,000	-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2	548.0	36,000	19,728,000	-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합 계				<b>509,823,000</b>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 가. 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事情補定),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 나. 인근 거래사례 자료

[ 전라남도 함평군,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호	목적	거래시점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면적(m <sup>2</sup> )	매매금액(원)	선정여부 / 비교
				이용상황	건물		단가(원/m <sup>2</sup> )	
a	매매	2024.04.12	엄다면 엄다리	계획관리	전	1,533.6	64,000,000	-
			273-1	-	-		41,731	
b	매매	2023.11.17	엄다면 송로리	계획관리	전	1,087.0	36,000,000	선정
			886-5	-	-		33,118	

### 다. 거래사례 선정사유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 및 물적 유사성이 있고 시점수정, 사정보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상기 사례(b)를 선정함.

### 라.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 마.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 전라남도 함평군 ]

사례	기 간	용도지역	변동률 (%)	지가변동률 산출
b	2023.11.17 ~ 2025.09.30	계획관리	1.426	$(1 + 0.00087 * 14/30) * (1 + 0.00089) * (1 + 0.01066) * (1 + 0.00186) * (1 + 0.00042 * 30/31)$ $\approx 1.01426$

※ 2025년 09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2025년 08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바. 지역요인

본 건 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 = 1.000)

## 사. 개별요인비교치 결정

기 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1	b	1.00	1.15	1.00	0.95	1.10	1.00	1.202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면적 등)에서 열세함.							
2	b	1.00	1.15	1.00	0.98	1.00	1.00	1.127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함.							
3	b	0.95	1.10	1.00	0.95	1.00	1.00	0.993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3 (접도구역 저축부분)	b	0.95	1.10	1.00	0.95	0.85	1.00	0.844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축부분 등)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4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5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6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7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8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 호	사례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9	b	0.95	1.10	1.00	1.00	1.00	1.00	1.045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10	b	1.00	1.15	1.00	1.00	1.00	1.00	1.150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함.							
11	b	1.00	1.15	1.00	1.10	1.00	1.00	1.265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함.							
11 (접도구역 저축부분)	b	1.00	1.15	1.00	1.10	0.85	1.00	1.075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토지이용상황 등)에서 우세하나,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축부분 등)에서 열세함.							
12	b	1.00	1.15	1.00	0.94	1.00	1.00	1.081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에서 열세함.							
12 (접도구역 저축부분)	b	1.00	1.15	1.00	0.94	0.85	1.00	0.919
비교의견	본 건은 사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일부 현황도로 등), 행정적조건(접도구역 저축부분 등)에서 열세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아.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비교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참작하여 토지단가를 산정함.

본건 기호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기호	사례단가						
1	b	33,118	1.000	1.01426	1.000	1.202	40,375	40,000
2	b	33,118	1.000	1.01426	1.000	1.127	37,856	38,000
3	b	33,118	1.000	1.01426	1.000	0.993	33,355	33,000
3 (접도구역 저촉부분)	b	33,118	1.000	1.01426	1.000	0.844	28,350	28,000
4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5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6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7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8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9	b	33,118	1.000	1.01426	1.000	1.045	35,102	35,000
10	b	33,118	1.000	1.01426	1.000	1.150	38,629	39,000
11	b	33,118	1.000	1.01426	1.000	1.265	42,492	42,000
11 (접도구역 저촉부분)	b	33,118	1.000	1.01426	1.000	1.075	36,110	36,000
12	b	33,118	1.000	1.01426	1.000	1.081	36,311	36,000
12 (접도구역 저촉부분)	b	33,118	1.000	1.01426	1.000	0.919	30,869	3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구 분	기 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토지	1	86.0	40,000	3,440,000	-
	2	1,256.0	38,000	47,728,000	-
	3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4	608.0	39,000	23,712,000	-
	5	1,808.0	39,000	70,512,000	-
	6	1,597.0	39,000	62,283,000	-
	7	890.0	39,000	34,710,000	-
	8	2,496.0	39,000	97,344,000	-
	9	1,828.0	35,000	63,980,000	-
	10	1,365.0	39,000	53,235,000	-
	11	177.0	42,000	7,434,000	-
55.0		36,000	1,980,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12	548.0	36,000	19,728,000	-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합 계				<b>543,563,000</b>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토지가액의 결정

### 가. 시산가액

구 분	기호	사정면적(m <sup>2</sup> )	단가(원/m <sup>2</sup> )	시산가액(원)	비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86.0	38,000	3,268,000	-
	2	1,256.0	35,000	43,960,000	-
	3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4	608.0	34,000	20,672,000	-
	5	1,808.0	36,000	65,088,000	-
	6	1,597.0	36,000	57,492,000	-
	7	890.0	36,000	32,040,000	-
	8	2,496.0	36,000	89,856,000	-
	9	1,828.0	34,000	62,152,000	-
	10	1,365.0	36,000	49,140,000	-
	11	177.0	40,000	7,080,000	-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12	548.0	36,000	19,728,000	-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합 계				<b>509,823,000</b>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86.0	40,000	3,440,000	-
	2	1,256.0	38,000	47,728,000	-
	3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4	608.0	39,000	23,712,000	-
	5	1,808.0	39,000	70,512,000	-
	6	1,597.0	39,000	62,283,000	-
	7	890.0	39,000	34,710,000	-
	8	2,496.0	39,000	97,344,000	-
	9	1,828.0	35,000	63,980,000	-
	10	1,365.0	39,000	53,235,000	-
	11	177.0	42,000	7,434,000	-
55.0		36,000	1,980,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12	548.0	36,000	19,728,000	-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b>합 계</b>				<b>543,563,000</b>	<b>-</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가격이나 거래당사자간의 정보 불균형, 거래의 필요성과 협상력 차이 등의 이유로 변동성이 있는 가격으로서 안정성이 높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건의 평가목적에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범위 내에서 합리성이 인정됨.

## 다.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 건 담보물의 시장성, 환가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상기의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함.

구 분	기 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토지	1	86.0	38,000	3,268,000	-
	2	1,256.0	35,000	43,960,000	-
	3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4	608.0	34,000	20,672,000	-
	5	1,808.0	36,000	65,088,000	-
	6	1,597.0	36,000	57,492,000	-
	7	890.0	36,000	32,040,000	-
	8	2,496.0	36,000	89,856,000	-
	9	1,828.0	34,000	62,152,000	-
	10	1,365.0	36,000	49,140,000	-
	11	177.0	40,000	7,080,000	-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12	548.0	36,000	19,728,000	-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합 계				509,823,0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

구 분	기 호	사정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고
토지	1	86.0	38,000	3,268,000	-
	2	1,256.0	35,000	43,960,000	-
	3	1204.0	33,000	39,732,000	-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4	608.0	34,000	20,672,000	-
	5	1,808.0	36,000	65,088,000	-
	6	1,597.0	36,000	57,492,000	-
	7	890.0	36,000	32,040,000	-
	8	2,496.0	36,000	89,856,000	-
	9	1,828.0	34,000	62,152,000	-
	10	1,365.0	36,000	49,140,000	-
	11	177.0	40,000	7,080,000	-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12	548.0	36,000	19,728,000	-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축부분	
합 계				<b>509,823,000</b>	-
제시외건물	(ㄱ)	(9.8)	33,000	323,400	관찰감가
합 계				<b>323,400</b>	-
합 계				<b>510,146,400</b>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2. 결정의견

본 건은 토지로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합리성이 인정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액을 토지 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용도	용도지역 또는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원/㎡)	금액(원)	
1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36-2	대	계획관리지역	86.0	86.0	38,000	3,268,000	
2	동소	938	전	계획관리지역	1,256.0	1,256.0	35,000	43,960,000	
3	동소	886-12	전	계획관리지역	1,613.0	1,204.0	33,000	39,732,000	
						409.0	28,000	11,452,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4	동소	936-1	전	계획관리지역	608.0	608.0	34,000	20,672,000	
5	동소	935	전	계획관리지역	1,808.0	1,808.0	36,000	65,088,000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자료:	703,540원	
6	동소	933	전	계획관리지역	1,597.0	1,597.0	36,000	57,492,000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자료:	2,917,270원	
7	동소	904	전	계획관리지역	890.0	890.0	36,000	32,040,000	
8	동소	902	전	계획관리지역	2,496.0	2,496.0	36,000	89,856,000	지상권자 한국전력공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자료:	5,112,700원	
9	동소	892	전	계획관리지역	1,828.0	1,828.0	34,000	62,152,000	
10	동소	890	전	계획관리지역	1,365.0	1,365.0	36,000	49,140,000	
11	동소	886-19	전	계획관리지역	232.0	177.0	40,000	7,080,000	
						55.0	34,000	1,870,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12	동소	886-18	전	계획관리지역	751.0	548.0	36,000	19,728,000	
						203.0	31,000	6,293,000	접도구역 저촉부분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용도	용도지역 또는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원/㎡)	금액(원)	
	소계							509,823,000	
(ㄱ)	(제시외건물) 동소	886-19 위지상	창고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9.8)	9.8	33,000	323,400	100,000 x5/15 관찰감가
	소계							323,400	
	합계							₩510,146,400.-	
				< 이 하 여 백 >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8. 임대관계 9. 기타 참고사항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 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소재 "송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등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지대임.

## 2. 교통 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용도에 따른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1),(3),(4),(7),(11),(1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2),(5),(6),(8)~(10)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2) : 동측 및 북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본 건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4),(5),(7),(8) : 남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9) : 맹지임.

기호(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1) : 북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2) : 서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황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6. 제시목록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임대관계
9. 기타 참고사항

## 5.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

기호(1),(2),(4)~(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11),(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서해안선)<고속국도법>임.

## 6. 제시목록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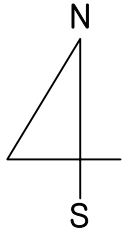
## 8. 임대관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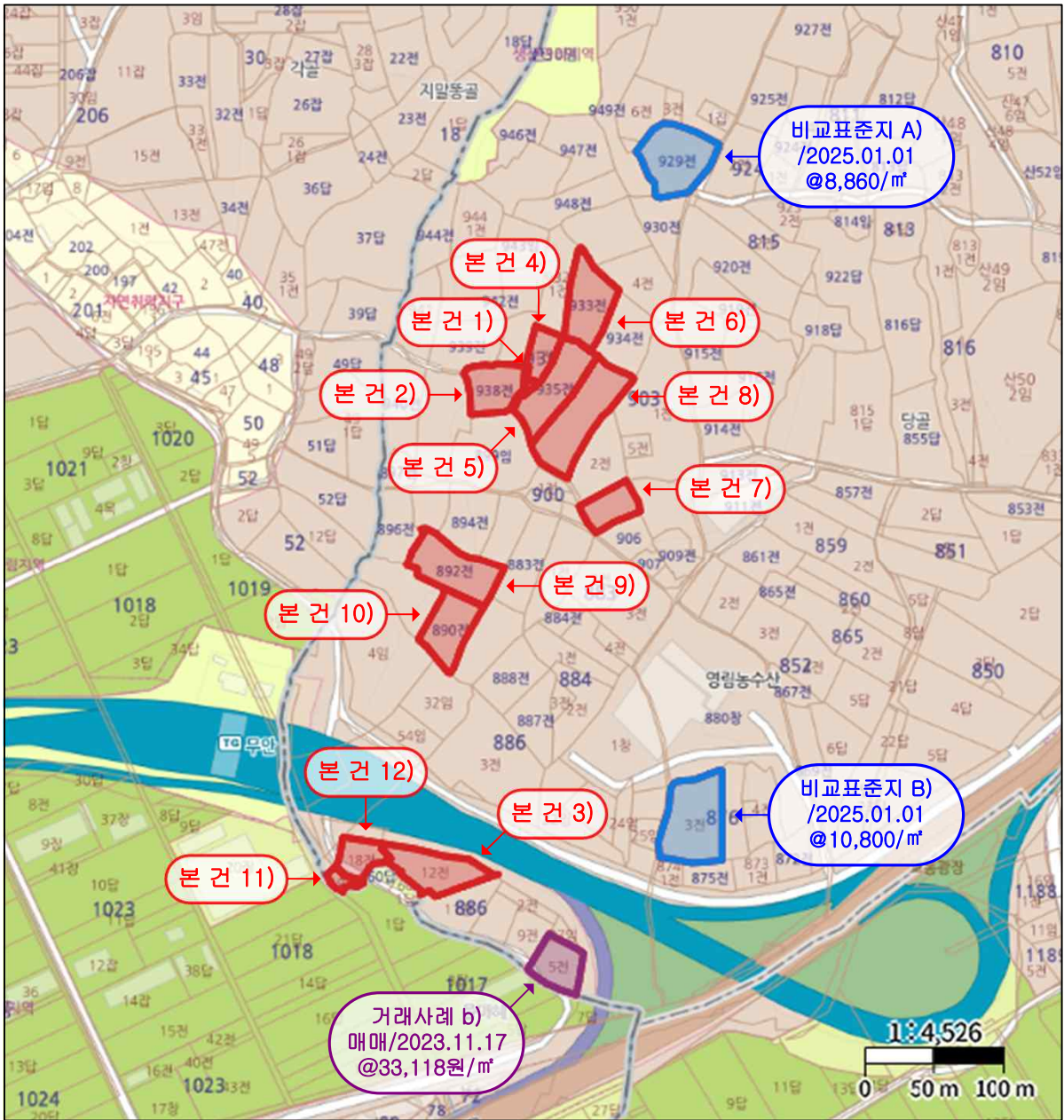
## 9. 기타 참고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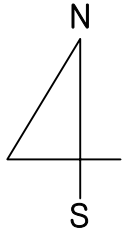
# 위 치 도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36-2번지 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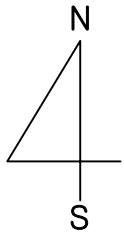
# 위 치 도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888-3번지 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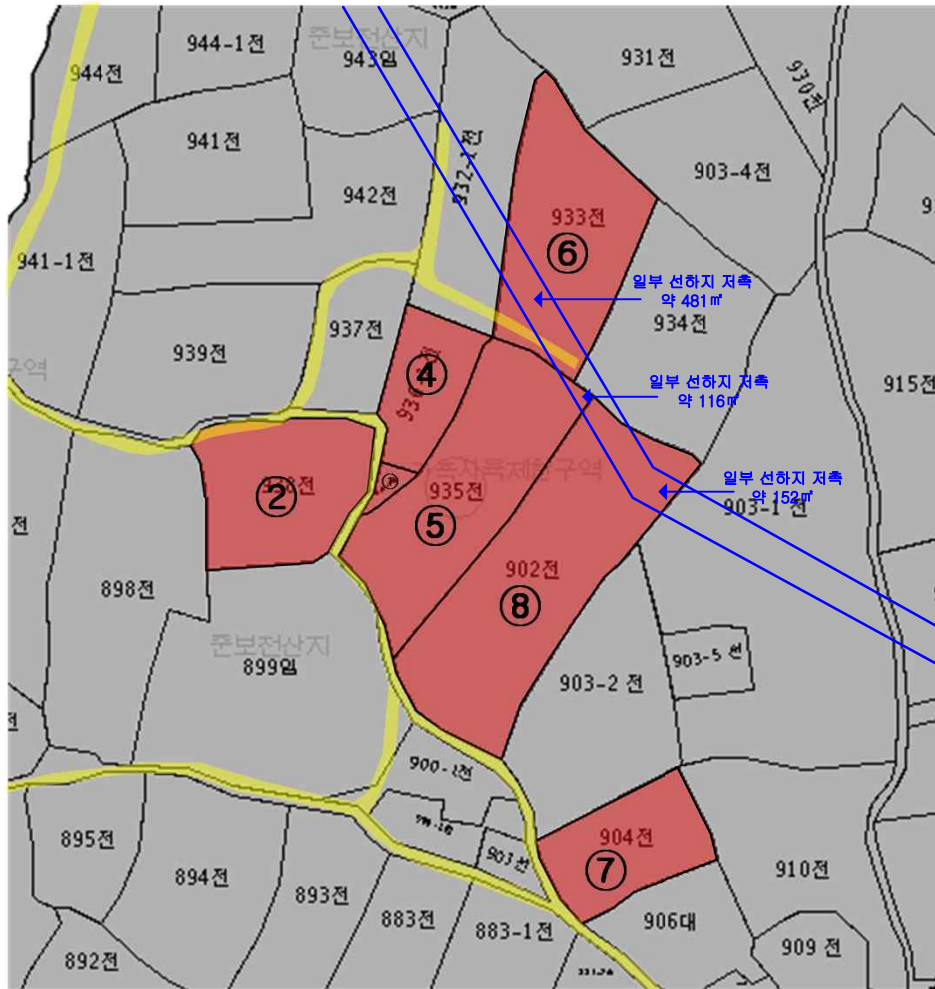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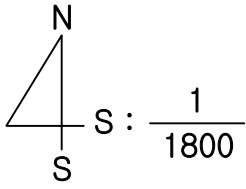
# 위 치 도











소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875번지 外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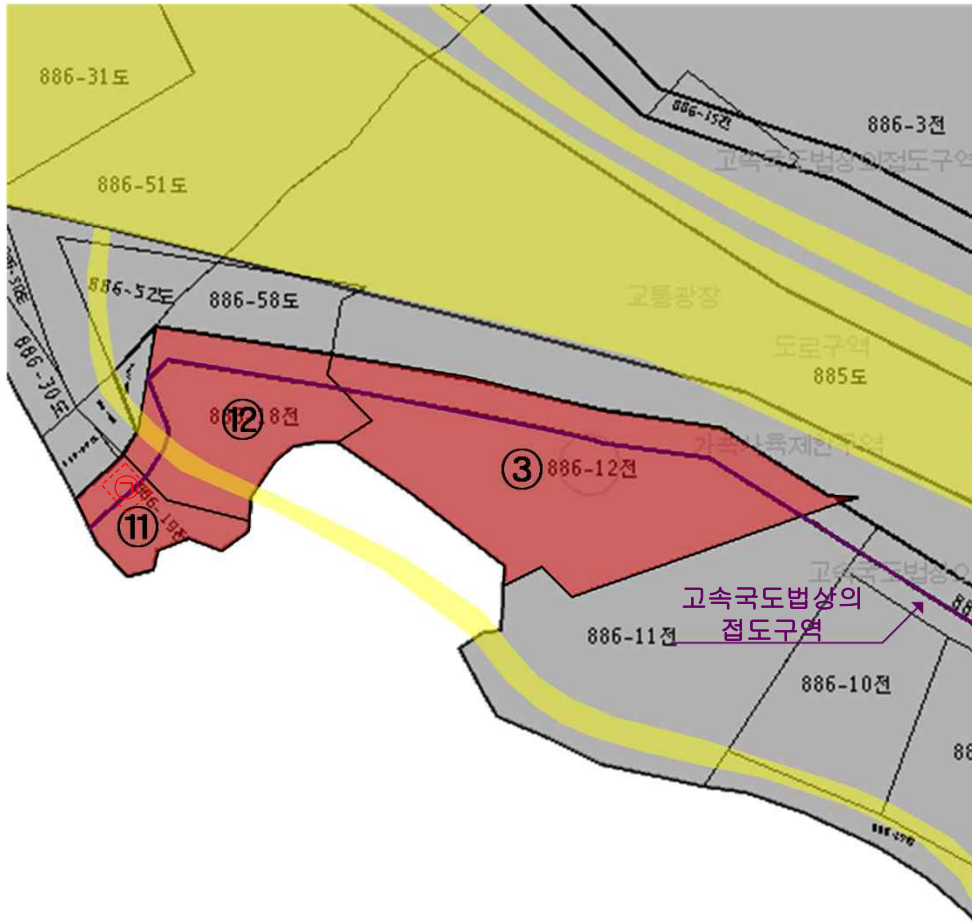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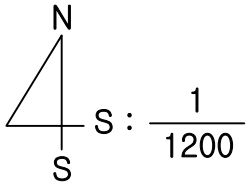
# 지 적 개 황 도











##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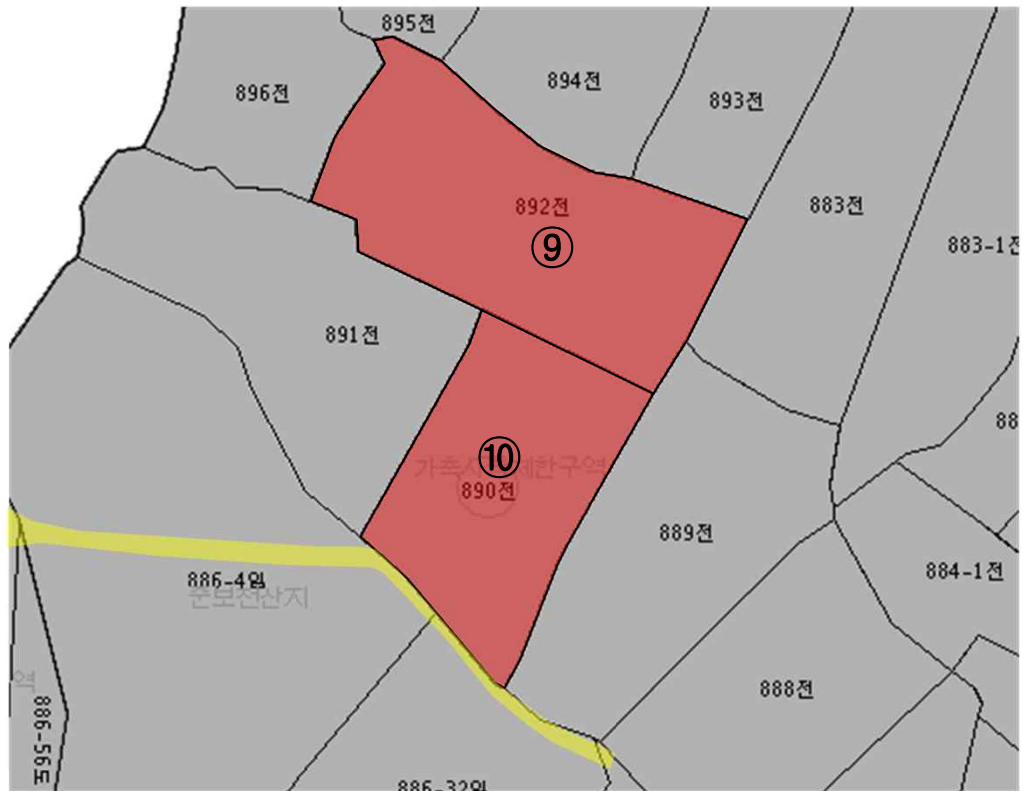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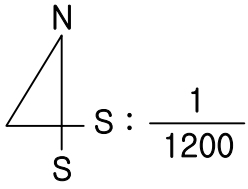
- |   |           |   |           |   |        |
|---|-----------|---|-----------|---|--------|
|  | 평가대상토지    |  | 평가건물 1층   |  | 제시외 건물 |
|  | 도 로 선     |  | 평가건물 2층   |  | 평가외 건물 |
|  | 계 획 도 로 선 |  | 평가건물 3층이상 |   |        |

# 지 적 개 황 도











<b>명 려</b>	 평가대상토지	 평가건물 1층	 제시외 건물
	 도로 선	 평가건물 2층	 평가외 건물
	 계획 도로 선	 평가건물 3층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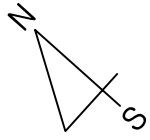
# 지 적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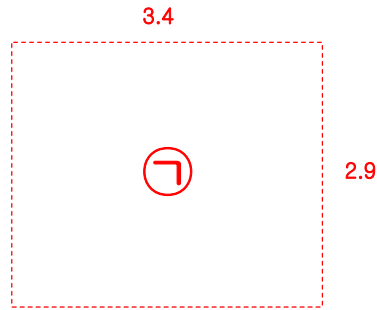
범 례

- |   |           |   |           |   |        |
|---|-----------|---|-----------|---|--------|
|  | 평가대상토지    |  | 평가건물 1층   |  | 제시외 건물 |
|  | 도 로 선     |  | 평가건물 2층   |  | 평가외 건물 |
|  | 계 획 도 로 선 |  | 평가건물 3층이상 |   |        |

# 건물개황도



S :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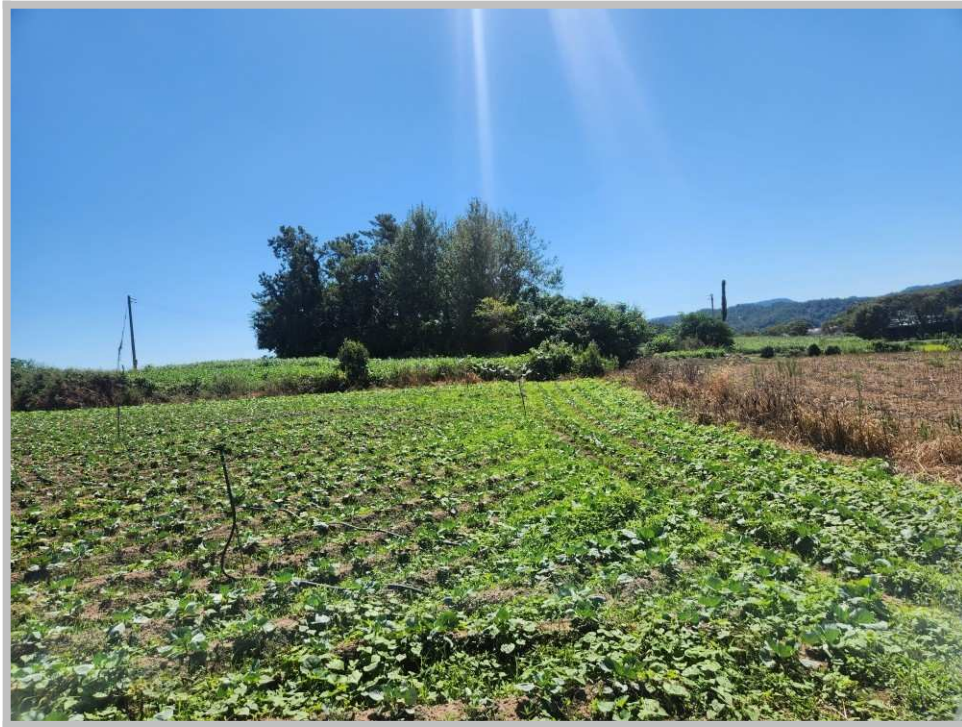


<제시외 건물>

기호 ㉠ :  $3.4 \times 2.9 \approx 9.8\text{m}^2$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 사 진 용 지



[본 건 토지 기호(1),(2),(4),(5),(8) 전경]



[본 건 토지 기호(3) 전경]

# 사 진 용 지



[본 건 토지 기호(6) 전경]



[본 건 토지 기호(7) 전경]

# 사 진 용 지



[본 건 토지 기호(9),(10) 전경]



[본 건 토지 기호(11) 전경]

# 사 진 용 지



[본 건 토지 기호(12) 전경]

##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우)5857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507호/TEL.(061)982-1230/FAX.(061)982-1231

문서번호: RB250919-08-3102

시행일자: 2025. 10. 02

수 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참 조: -

제 목: 감 정 평 가 회 보

선결			지		
접	일자 시간		시		
수	번호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1. 우리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5. 09. 19.자 귀 제 『2025타경51464』 호로 의뢰하신 『천윤선 소유물건 (2025타경51464)』 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회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감 정 평 가 서 1 부  
2. 청 구 서 1 부 끝.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지 사 장 조 창 범

#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RB250919-08-3102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귀하

### — 金 팔 십 구 만 오 천 사 백 원 整 (₩895,400.-)

2025. 09. 19자 귀 제 『 2025타경51464 』 호로 의뢰하신 『 천윤선 소유물건 (2025타경51464)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 가 수 수 료	603,304	※ 평가수수료 745,000 + (510,146,400 - 500,000,000) × 9/10,000 = ₩754,131 754,131 × 0.8 = ₩603,304
(나)	여 비	180,000	
	토 지 조 사 비	-	
	물 건 조 사 비	-	
	공 부 발 급 비	24,000	
	기 타 실 비	7,000	
	특 별 용 역 비	-	
	소 계	211,000	
합 계 (가+나, 천원미만 절사함)		<b>₩814,000</b>	
	부 가 가 치 세	₩81,400	
총 계		<b>₩895,400</b>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		<b>₩895,400</b>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50919-08-3102)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연락이 안 될 경우 국세청 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 계 좌 번 호 ★

◆ 농협은행

301-0178-2513-61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

2025년 10월 02일

##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507호

TEL.(061)982-1230

FAX.(061)982-1231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736-85-00090 ]